

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. 10. 4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읍·면장들에게 위임된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하여, 가로수의 생육 환경, 미관 개선과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관련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가로수 관리 위임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제1항)

- (신설) 읍·면에서 식재한 가로수의 생육 환경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관리(제6호)
- (신설)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 상황 보고(제7호)

나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0. 4. ~ 10. 9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4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숲등”을 “도시숲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담양군(이하“군””을 “담양군(이하 “군”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담양군수(이하“군수””를 “담양군수(이하 “군수””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”를 “수립·시행해야”로 한다.

제4조제7항 본문 중 “출석하여야”를 “출석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식재하여야”를 “식재해야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조성하여야”를 “조성해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협의하여야”를 “협의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토하여야”를 “검토해야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관리하여야”를 “관리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교체하여야”를 “교체해야”로, “협의하여야”를 “협의해야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하여야한다”를 “해야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방제하여야”를 “방제해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보하여야”를 각각 “통보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부담하여야”

를 “부담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“준공하여야”를 “준공해야”로 한다.

제19조제3항제1호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치하여야”를 “조치해야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실시해야”로 한다.

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취하여야”를 “취해야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치하여야”를 “조치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실시하여야”를 “실시해야”로 한다.

6. 읍·면에서 식재한 가로수의 생육 환경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관리

7.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 상황 보고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도시숲등의</u>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도시숲 등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<u>담양군</u> (이하“ <u>군</u> ”이라 한다)의 도시숲·생활숲 및 가로수(이하 “도시숲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<u>담양군</u> (이하 “ <u>군</u> ”----- ----- -----.
제3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) ① <u>담양군수</u> (이하“ <u>군수</u> ”라 한다)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② (생략)	제3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) ① <u>담양군수</u> (이하 “ <u>군수</u> ”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수립·시행해야 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) ① ~ ⑥ (생략)	제4조(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) ① ~ ⑥ (현행과 같

⑦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⑧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~ ⑫ (생략)

제5조(도시숲의 조성 대상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, 농경지,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6조(도시숲의 조성방법) ① (생략)

음)

⑦ -----

----- 출석해야 ----
----. -----

-----.

⑧ -----

-----.

----- 제출해야 -----.

⑨ ~ ⑫ (현행과 같음)

제5조(도시숲의 조성 대상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식재해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도시숲의 조성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체육시설,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, 조림(造林)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 략)

제7조(도시숲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)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성협의 등)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

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 략)

제13조(보호·관리시설물) ①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·관리시설물의 종류는 [별표 4]에 따라 도

② -----

----- 조성해야 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도시숲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) -----

----- 관리해야 -----.

제9조(조성협의 등) ① -----

----- 협의해야 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검토해야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보호·관리시설물) ① --

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
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
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보호 ·
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
워 [별표 4]의 규정에 따라 교체
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
한 협의 시 군 가로수 담당부서
는 [별표 5]의 규정이 반영될 수
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5조(가지치기) 가지치기를 할
경우에는 [별표 6]에 따라 하여
야한다.

제16조(병해충 방제) 주요 충해
및 기타 돌발해충의 방제는 [별
표 7]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
야 한다.

제18조(비용 부담 등) ① (생 략)

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
신청을 할 경우에는 [별지 제1
호서식] 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
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
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

----- 관
리해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교체
해야 -----

----- 협의해야 -----.

제15조(가지치기) -----
----- 해야
한다.

제16조(병해충 방제) -----

----- 방제해야
-----.

제18조(비용 부담 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- 제출해야 -----.

③ -----

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관련 법령, 조례, 계획 등과 적
합하지 않을 경우, 내용을 보완
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
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
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
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
한다.

④ (생략)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
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
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
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
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
다.

⑥ (생략)

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
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
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
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준공 1
4일 전에 도시숲 담당부서의 의
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.

⑧ (생략)

제19조(훼손자 신고 등) ①·②
(생략)

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

----- 통보해야 -----.

----- 통보해야 ----

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 부

담해야 -----

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준공해야 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훼손자 신고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
각 호에 따라야 한다.

1. 신고인은 [별지 제2호서식]을
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2. (생략)

④ 군수는 도시숲등에 대한 신
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[별지 제
3호서식]의 도시숲등 훼손자 접
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
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
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
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제20조(점검 등) ① (생략)

② 정기 점검은 상·하반기 등
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21조(주민참여 등) ①·② (생
략)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
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
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
를 취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23조(가로수 관리위임) ① 읍·

-----.

1. -----
----- 제출해야 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조치해야 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점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실시해야 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주민참여 등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취해야 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가로수 관리위임) ① -----

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읍·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----- 조치해야 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읍·면에서 식재한 가로수의 생육 환경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관리

7.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 상황 보고

② -----

-- 실시해야 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